

의안번호	2209665
의 퇴 인	성일종의원
회 답 일	2025.6.24.
추계번호	25D31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게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808억 6,300만원(연평균 561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단기복무부사관 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56,173	56,173	56,173	56,173	56,173	280,863	56,17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뿐만 아니라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현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중 일부는 「군인보수법」 제17조의2 및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장려수당을 1회 1,000만원 지급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수당 대신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임
-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려수당은 폐지되고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장려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장려수당과 장려금의 차액을, 장려수당 지급 미대상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전액을 신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기간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단기복무부사관 수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는 2025년 예산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장려금 지급(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 장려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복무부사관 전체¹⁾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되, 추계기간 장려금 지급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현재 단기복무부사관 중 현역 일등병 이상 복무자 등 일부²⁾에게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표 2]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평균
지급자	1,114	3,281	1,612	1,020	1,757
미지급자	5,541	5,119	3,901	2,992	4,388
합계	6,655	8,400	5,513	4,012	6,145

자료: 국방부

- 장려금 및 장려수당 지급단가는 2025년 예산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장려금과 장려수당 지급단가 차이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장려금 지급단가(A)	12	12	12	12	12
장려수당 지급단가(B)	10	10	10	10	10
차이(A-B)	2	2	2	2	2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군인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함

2)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을 단기복무부사관에게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808억 6,300만원(연평균 561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 기존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장려수당과 장려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장려수당 지급 미대상자는 장려금 전액을 신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추가 지급단가	2	2	2	2	2	-	-
	지급대상	1,757	1,757	1,757	1,757	1,757	8,784	1,757
	예산(A)	3,514	3,514	3,514	3,514	3,514	17,568	3,514
장려수당 지급 미대상자	지급단가	12	12	12	12	12	-	-
	지급대상	4,388	4,388	4,388	4,388	4,388	21,941	4,388
	예산(B)	52,659	52,659	52,659	52,659	52,659	263,295	52,659
추가재정소요(A+B)		56,173	56,173	56,173	56,173	56,173	280,863	56,17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장려수당 및 장려금 지급단가가 2025년 예산 단가가 유지되고 장려수당은 폐지되는 반면 장려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복무부사관 전체에게 장려금이 지급되고 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평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